

『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6월 17일

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0.3.3)되어 2010.7.1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·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·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목적 (안 제1조)

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○ 정의 (안 제2조)

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

○ 사실조사 의뢰 사유 (안 제3조)

-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-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
○ 관련 기관 또는 단체 (안 제4조)

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○ 협약 (안 제5조)

-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
- 협약서에는 목적, 범위, 기간, 비용, 책임과 의무, 해지, 효력 발생 등 규정

라. 참고사항

- 「담배사업법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, 제4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2010. 3.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이 개정 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목적 명시(안 제1조)
- 정의 명시(안 제2조)
- 사실조사 의뢰 근거조항 명시(안 제3조)
-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사항 명시(안 제4조)
- 협약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5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
- 공정·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제기에 따른 민원해소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